

산학협동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 5. 23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의 산학협동체제 구축 및 확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학협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총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3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동 계획과 관리,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동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3. 산·학·관간의 협동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산학협동을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5 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은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참석위원들이 날인하여 별도 보관한다.

제 6 조 (간사)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7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실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